

4.3.31 복수전공및부전공운영규정

제정 2017. 01. 19.
개정 2018. 09. 05.
개정 2019. 02. 01.
개정 2020. 08. 19.
개정 2021. 11. 29.
개정 2022. 07. 28.
개정 2024. 04. 01.
개정 2024. 07.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7조및 제48조에 의거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복수전공이란 제1전공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말한다.

② 제1전공이란 소속 모집단위에서 우선적으로 학생이 이수하는 전공과정을 말한다.

③ 제2전공이란 소속 모집단위 또는 타 모집단위에서 이수하는 제1전공 이외의 전공과정을 말하며, 제3전공이란 제1전공 및 제2전공 이외의 전공과정을 말한다.

④ 부전공이란 소속 모집단위에서 우선적으로 학생이 이수하는 전공과정 이외의 타 모집단위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일정수준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이수대상) 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08.19.>

제4조(허용인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의 허용인원은 교수인력, 강의실(실험실습실을 포함) 등을 고려하여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① 학사내규 제47조에 의거 졸업학점 기준별 1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및 편입생은 제2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7.23.>

② 제3전공의 이수신청은 제2전공 과정을 마친 자에 한 한다.

제6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소속)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소속은 제1전공 학과로 한다.

제7조(신청 및 승인) ①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수(부)전공이수신청서<별지서식 1>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복수(부)전공의 대상이 되는 해당학과(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부)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과(부)에서는 심사 결과를 소정의 신청기간에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9.05>

제8조(이수 및 취소)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전공 및 복수전공교과 학점을 각각 30학점이상,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전공 30학점 이상 및 부전공교과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타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2.01., 2021.11.29., 2022.07.28.>

② 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 학과에서 이수할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때의 학점은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8.19.>

- ③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수(부)전공이수취소원<별지서식 2>을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복수(부)전공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아 소정의 신청기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5>
- ④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취소한 자가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복수전공 이수자가 제1전공의 소요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전공의 소요학점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⑥ 동일전공을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으로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부전공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⑦ 동일전공을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전공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부전공으로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⑧ 단과대학 공동과목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4.07.23.>

제9조(재학연한)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재학연한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험실습비의 징수)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가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때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증서<별첨서식 3> 및 <별첨서식 4>를 수여한다.

- ②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 에게는 제1전공의 학위수여를 유보하여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2개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③ 복수전공 중도탈락(포기)한 자는 해당학기에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 제정 전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 학생의 경우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본 규정 개정 전 복수전공 및 부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본 규정 개정 전 복수전공 및 부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024. 3. 1. >
2. (개정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3일에 개정한다

<서식 1>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신청서

학 적 사 항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휴대전화)			
신 청 사 항	신청구분	신청학과(전공)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복수전공					
	<input type="checkbox"/> 부전공					

본인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취득 요건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복수·부전공 이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인)

초당대학교 총장 귀하

※ 하단은 기재하지 않고 복수·부전공 신청 학과에 제출

선발구분	<input type="checkbox"/> 복수전공 <input type="checkbox"/> 부전공	심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미승인
선발사유	(복수·부전공 이수 승인 또는 미승인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바랍니다.)		
복수·부전공 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복수·부전공 학과장			(인)

제 00-0000 호

학 위 증

성 명 0 0 0

생년월일 19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대학교 ()학과, ()학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초 당 대 학 교 총 장

00박사 0 0 0

학위번호 초당대00(학)0000

제 00-0000 호

학 위 증

성 명 0 0 0

생년월일 19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과 (부전공: ()학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초 당 대 학 교 총 장

00박사 0 0 0

학위번호 초당대00(학)0000